

1. 개정이유

토지이용규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·지구 지형도면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정비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·지구와 관련된 자료 정비의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·정확성 확보 의무규정(안 제17조)
- 나. 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·운영을 의무화하여 주체·구성원·임무를 규정하고 자료간 불부합·불일치를 정비토록 규정(안 제18조)
- 다.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2)
- 라. 지역·지구등 변경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최신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3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역·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지역·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국토이용정보체계”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의 지역·지구등 데이터베이스,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,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, 분산된 국토이용정보를 통합·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(KLIP)을 말한다.

5. “연속지적도”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.

제5조제3항제2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”를 “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토지종합 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”을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을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은 SHAPE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LURIS) 등재시에는 JPG파일”을 “토지이용에 등재하는 지형도면등은 PDF파일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표준코드) 지형도면등은 「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」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라야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검수를 완료한 개별 지역·지구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”을 “자료정비는 개별 지역·지구등과 관련된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·관리함”으로, “도출한다”를 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령에서 제시하는”을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의”로, “확보한다”를 “확보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적불부합등”을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불부합등”으로, “소관청에 정비를 요청한다”를 “정비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·지구등의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장 1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으로 자료정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도시계획 관련 부서

2. 지적 관련 부서
3. 산지 관련 부서
4. 농지 관련 부서
5. 건축 관련 부서
6. 공원,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
7. 그 외 지역·지구등을 관리하는 부서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료정비협의체를 통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자료 정비와 관련한 부서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자료정비를 수행하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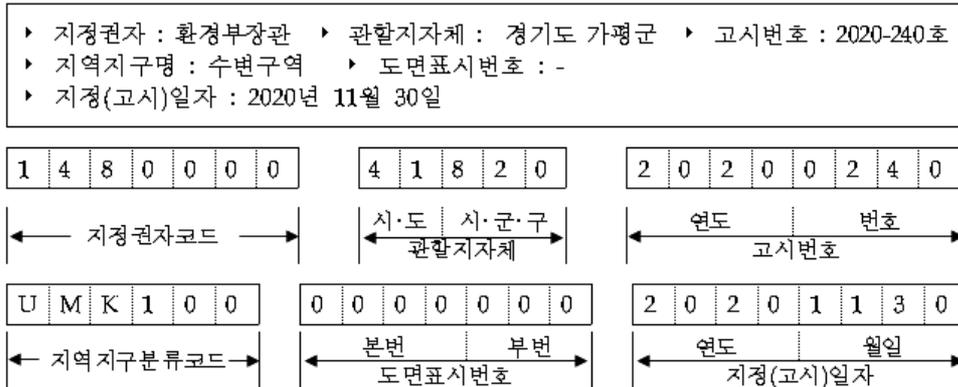
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자료정비 과정에서 지역·지구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지역·지구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9조제2항 중 “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84조”를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”로, “소관청에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 정비하도록”을 “지적 소관부서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 구축지침을 준용하되 지역·지구”를 “지역·지구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정권자, 지역·지구분류코드 등의 속성자료는 「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」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

코드를 따르도록 하며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.



[그림 10] 속성자료 입력방법

제27조제1항 중 “지역·지구등”을 “기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지역·지구등”으로, “국토이용정보체계”를 “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”로 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전산파일 정비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·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고시사항의 정보·이력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다.

1. 지역·지구등의 전산파일 오류로 인하여 고시사항과 달리 등재된 경우
2. 연속지적도의 변경으로 인해 필지별 접합·저축의 정보가 고시사항과 달리 제공되는 경우
3. 지역·지구등의 경계 굴곡점에 대한 단순한 조정 및 정비
4. 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전산파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

② 전산파일 정비의 대상은 지역·지구등의 계획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.

③ 지역·지구등의 전산파일을 정비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형도면등 정비·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자(이하 정보체계운영자)”를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지정권자는”을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항상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·갱신”을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령의 개정·폐지, 지역·지구등의 명칭 변경 등 수정·갱신된 정보를 정보체계운영자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”으로 한다.

제33조 중 “2019년 1월 1일”을 “2022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서식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형도면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지형도면등 정비·관리 대장

연번	정비일	레이어	코드	MNUM	정비사유	확인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국토이용정보체계”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(KLIS), 도시계획정보체계(U PIS),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LURIS) 등을 말한다.</p> <p>5. “연속지적도”란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,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국토이용정보체계”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의 지역·지구 등 데이터베이스,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,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, 분산된 국토이용정보를 통합·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(KLIP)을 말한다.</p> <p>5. “연속지적도”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.</p>

등재된 도면을 말한다.

6. ~ 8. (생략)

제5조(지형도면등의 작성대상) ①

· 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형도면은 작성
· 고시하지 않더라도 국토이용
정보체계에 해당 자료를 등재하
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」 제117조에 따라 지
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
가구역

3. (생략)

제6조(지형도면등의 작성원칙) ①

(생략)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
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·지구
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시
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 등에 의
하도록 한다.

1. 지역·지구등에 대한 지형도
면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
및 원점은 토지종합 정보망
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에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형도면등의 작성대상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
한 법률」 제10조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형도면등의 작성원칙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「공간정보의 구축
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(생략)

제9조(지형도면등의 작성) ① (생략)

② 지형도면등의 작성시 기준이 되는 자료가 도면일 경우에는 스캐닝, 기하보정, 벡터라이징을 실시하여 작성하며,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 형식으로 변환한다.

③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(도면의 형식) ①·② (생략)

③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LURIS) 등재시에는 JPG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~ ⑦ (생략)

제11조(표준코드) 지형도면은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

령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을 -----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지형도면등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은 SHAPE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도면의 형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토지이용에 등재하는 지형도면등은 PDF파일 -----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표준코드) 지형도면등은 「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

스 구축지침에서 규정한 표준분류체계의 표준코드에 따라야 한다.

제17조(자료정비 목적) ① 검수를 완료한 개별 지역·지구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도출한다.

② 법령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·지구등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.

③ 지적불부합등으로 지역·지구등의 입력이 어려운 지역을 도출하여 소관청에 정비를 요청한다.

제18조(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지정권자는 지역·지구등의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 등의 문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·지구등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자료정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

지침」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라야 한다.

제17조(자료정비 목적) ① 자료정비는 개별 지역·지구등과 관련된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·관리함-----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의 -----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불부합등----- 정비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·지구등의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장 1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으로 자료정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있다.

② 자료정비협의체는 의장 1인과 해당 지역·지구등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하며, 의장은 실무담당자중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정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의장은 자료정비협의체를 운영 및 관리하고, 실무위원회는 불부합·불일치가 발생한 지역·지구등에 대한 자료정비를 수행하도록 한다.

<신 설>

1. 도시계획 관련 부서

2. 지적 관련 부서

3. 산지 관련 부서

4. 농지 관련 부서

5. 건축 관련 부서

6. 공원,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

7. 그 외 지역·지구등을 관리하는 부서

<삭 제>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료정비협의체를 통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자료 정비와 관련한 부서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자료정비를 수행하도록 한다.

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자료정비 과정에서 지역·지구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지역·지구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9조(자료정비 방법) ① (생략)

②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잘못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청에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 정비하도록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6조(속성자료의 입력) ① 도형 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,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 구축지침을 준용하되 지역·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지번코드

3. ~ 9. (생략)

② 지정권자, 지정일자, 고시일자, 지역·지구코드 등은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의 표준코드를 준용하도록 하며 입력방법은 다음과

제19조(자료정비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-----

--- 지적 소관부서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속성자료의 입력) ① -----

--- 지역·지구등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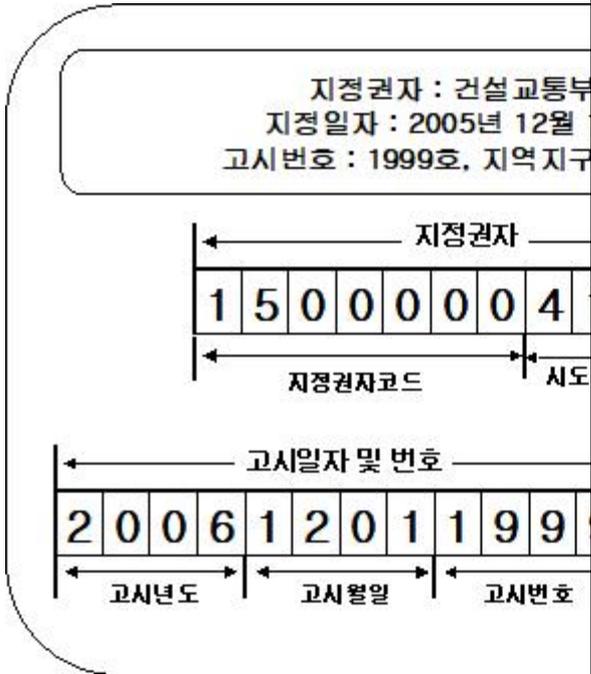
<삭 제>

3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지정권자, 지역·지구분류코드 등의 속성자료는 「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」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르도록 하

같다.

[그림 10] 지정권자, 지정일자, 고시일자, 지역·지구 코드의 입력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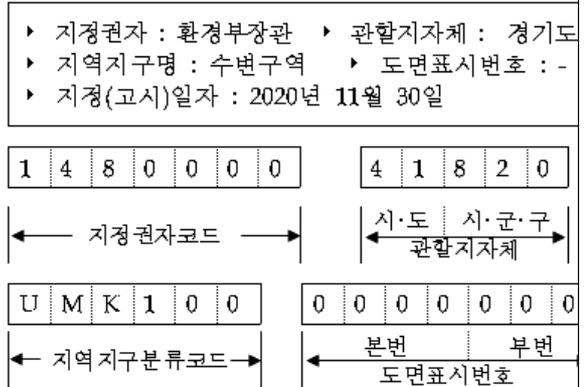
제27조(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)
① 지역·지구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며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.

[그림 10] 속성자료 입력방법



제27조(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)
① 기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지역·지구등-----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2(전산파일 정비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·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고시사항의 정보·이력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다.

1. 지역·지구등의 전산파일 오류로 인하여 고시사항과 달리 등재된 경우

2. 연속지적도의 변경으로 인해 필지별 접합·저축의 정보가 고시사항과 달리 제공되는 경우

3. 지역·지구등의 경계 굴곡점에 대한 단순한 조정 및 정비

4. 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전산파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

② 전산파일 정비의 대상은 지역·지구등의 계획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.

③ 지역·지구등의 전산파일을 정비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형도면등 정비·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0조(이의신청)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발급된 지역·지구등

제30조(이의신청) -----

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
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
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
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
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 2022년 7월 1일 -----

----- 6월 30일-----

-----.